

의안번호	2205850
의 퇴 인	서지영 의원
회 답 일	2024.12.10.
추계번호	24C5362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8,500만원(연평균 5,7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학생 마음건강증진 기본계획 (안 제5조)	30	—	—	—	—	30	6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안 제9조)	51	51	51	51	51	255	51
계	81	51	51	51	51	285	57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교육·상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3.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 등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2.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3.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4.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제도의 정비 및 매뉴얼의 개발·보급 6.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체계의 구축 7. 그 밖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항)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감은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항) 그 밖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제1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추진 지원 2.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자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등의 수집·분석 및 연구 지원 3. 학생 및 학부모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4.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지원 5.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6. 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 등 위기관리 지원 7. 제10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8.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지원 운영 및 연계 지원 9. 제17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보급 10. 학생 마음건강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1.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2항)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항)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지정·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8조 (교육감의 임무 등)	(제1항)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증진 등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9조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제1항)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건강·상담·학생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사한 성격의 교육감 소속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2.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 조정 3.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및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체계의 구축 4. 제10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5.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정 6.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7.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안 제10조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제1항)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교원연수·컨설팅 등 학교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없거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2항)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지역지원센터의 수 및 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 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그 밖에 지역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또는 지정의 기준·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1조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제1항)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의 종류·기능, 설치·운영, 출석 일수의 인정 및 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2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제1항) 교육감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에서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관련 전문가(이하 “정신건강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정신건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담 제공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지역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가가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4항) 정신건강전문가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과를 확인하고, 지역지원센터에 연계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교육감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항)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정과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9	안 제14조 (사회·정서 역량의 함양)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 등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마음건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회·정서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5조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	(제1항)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이 정서·행동 문제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이하 “지원대상 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 및 지원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기준에 따라 요청을 한 사람, 학생 본인 및 보호자, 관련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생에 대한 상담결과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 위기학생지원, 학생상담 등을 위한 학교 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4항)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선정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에게 해 당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기존 상담결과를 포함한 다)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의무규정
		(제5항)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교육감 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과 제6 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선정된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야 한다. 1. 학생·학부모에 대한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7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제6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정서·행 동 문제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심리, 건강, 안전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의하 지 아니하여도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원 사실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항)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6항 각 호의 조 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1	안 제17조 (교원의 연수지원 등)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전문적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서·행동 문제를 겪 고 있는 학생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학생 상담·지도·치료연계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 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 비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교육과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 등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 재정지출 증가분에 대한 산출이 곤란
2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안 제7조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위 프로젝트 전담기관 등에 위탁하여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 및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 시행 후 별도 기관 설치 또는 기존 기관에 대한 센터 지정 가능성이 있으나,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함
4	안 제8조 (교육감의 임무 등)	×	·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선언적 성격의 책무규정으로 재정지출 증가분에 대한 산출이 곤란함 ¹⁾
5	안 제9조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0조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	·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함 · 다만, 2024년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는 직속 또는 위탁기관으로 '위 센터'를 설치·위탁하며, 관련 인력(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는 교육청 자체 재정으로 운영 중임²⁾ · 이에 제정안의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인 '위센터'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11조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	·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교육 지원 및 병원 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기관인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2024년 현재 부적응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해 위탁교육, 병원 치료 연계,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위해 위스쿨, 가정형·병원형 위센터 52개소가 운영 중이며, 해당 기관은 교육청 자체 재정을 통해 운영 중임 · 이에 제정안의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은 '위스쿨 등'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12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	·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에서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 · 다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신과 진료에 대한 학부모 선입견 및 의료 취약 지역 거주 등으로 병·의원 등 연계가 어려운 위기학생 개입 지원 사업인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며, 2024년의 경우 특별교부금 82.4억원이 교부됨³⁾ · 이에 제정안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이 운영 중인 사업의 규모와 유사하게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1) 안 제8조제2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해당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담당'하는 부서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학생 마음 건강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2) 특별교부금으로 대면 상담 자문('24년 5.96억), 위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24년 4개 시도(공모·선정) 총 10억원)등 일부 지원(자료: 교육부)
- 3)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자체예산을 투입중임(자료: 교육부)
- 4) 2024년 특별교부금 66.9억원 및 교육청 자체 재원(자료: 교육부)
- 5) 위 클래스 상담 건수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학년도에는 내부상담 전문가 3,322,859건 및 외부상담전문가 352,976건 등 총 3,675,835건의 상담이 실시됨(자료: 교육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4조 (사회·정서 역량의 함양)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마음건강 교육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 하도록 규정 · 다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교육으로서 사회정서교육 도입을 위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 며, 2025년 이후에는 담임·교과 교사 등 모든 교사가 교과 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 정임 · 이에 제정안의 표준 프로그램을 ‘한국형 사회정서교 육 프로그램’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 로 예상됨
10	안 제15조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	-	· 제정안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서·행동 문제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마음건강 등을 위한 교육,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 · 다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등은 학교 내 위 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경우 병·의 원 등을 통한 진료·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⁴⁾⁵⁾ · 이에 제정안의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을 현재 운영중인 상담 및 진료·치료비 지원 등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11	안 제17조 (교원의 연수지원 등)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 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 등을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 · 다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사회정서역 량 함양 등 연수를 위해 2024년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원 양성 연수(1,600명)을 실시하였고(특별교부금 640백 만원), 선도교원을 통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학생건강지원강화’사업 중 일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발견 및 상담·지도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 하고(100백만원), 학교 상담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특별교부금 등 ‘학생상담통 합지원’사업 내 약 115백만원), 이외에도 교육청에서 위 센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원연수를 실시 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의 교원에 대한 연수지원이 현행 사업과 유사한 규모로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20조(벌칙)	×	· 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시점에서 법 시행 이후 해당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하여질 인원수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있거나, 추가재정 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안 제5조) 및 ②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안 제9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5년 주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에 계획 수립 과정의 자문 및 의견 수렴 비용 등 제반 비용은 기관의 기본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므로 연구용역비가 2026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관련 정책연구비의 연구용역비와 유사한 규모로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함
-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위원 15인⁶⁾으로 구성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의 위원 수당을 추계하며, 이외에 회의개최를 위한 부대비용은 기관의 기본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 안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감은 필요한 때에 유사한 성격의 교육감 소속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육청에서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6) 안 제9조(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5조)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5년 주기로 발생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되,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서 발주하였던 기본계획 관련 정책연구의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2026년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2]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	연구주제	사업연도	연구비용
교육부	제2차 5개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20	30
"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0	30
"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	2021	30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안 제5조)	30	-	-	-	-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안 제9조) 17개 시도교육청에 위원 15인으로 구성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의 수당을 추가재정소요로 추정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는 시·도교육청별 학교보건위원회⁷⁾ 위원회 관련 예산편성⁸⁾을 참조하여, 해당 위원회가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하고, 회의 1회당 1인의 위원에게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년간 총

7) 「학교보건법」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8)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10만원·3회 개최 편성, 경기도교육청 10만원·1회 편성, 부산시교육청 10만원·1회 편성, 인천광역시교육청 10만원·2회 편성

2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됨

- (2026~2030년) 5,100만원=10만원×15인×2회×17개시도

□ (추가재정소요) 제정안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100만원, 2030년 5,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8,500만원(연평균 5,7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며,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4]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학생 마음건강증진 기본계획 (안 제5조)	30	-	-	-	-	30	6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안 제9조)	51	51	51	51	51	255	51
계	81	51	51	51	51	285	57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